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동의안은 2010년 5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6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법률 제10143호, '10. 3.22.)되어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4. 검토의견

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진상조사기간이 2010년 3

월 24일로 만료되어, 위원회 설치근거법이 폐지됨에 따라 실무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 우리도는 2004년 12월 31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진상 조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도민들로부터 13,245건의 피해신고를 접수, 사실조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진달을 완료하였음.

또한 정부에서도 진상조사기간을 2010년 3월 24일로 종료하여 진상조사 사무를 종료하고 관련 법령을 폐지함에 따라 우리도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사무도 사실상 종료된 상태임.

- 정부에서는 미처리된 강제동원 피해조사의 완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에 대한 사무종료와 근거법령의 폐지로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는 다른 의견이 없음.

다만, 정부에서 지속추진하고 있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업무를 도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도민편익 시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붙 임 :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